

# 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

제정 : 1999. 3. 30.

1차 개정 : 2023. 2. 16.

2차 개정 : 2023. 11. 16.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 【목적】 이 유치원규칙은 유아교육법 제 10조와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외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명칭】 본 학칙은 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명한다.

제3조 【위치】 본 유치원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 2199에 위치한다.

## 제 2 장 수업연한 · 학기 및 휴업일

제4조 【교육연한】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하되, 만5세는 1년, 만4세는 2년, 만 3세는 3년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, 유치원의 학년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5조 【학기】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·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(이하"원장"이라 한다)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,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6조 【휴업일】 ① 본 유치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토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, 국가에서 정한 휴일
2. 방학(여름 · 겨울)과 학년말 방학
3. 개원기념일(외북초등학교 개교기념일에 준함)
4. 원장 재량휴업일(외북초등학교 재량휴업일에 준함)

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 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(이하 "유치원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

정하며, 토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·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
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,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.

### 제 3 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

**제7조 【학급편제】** ① 본 유치원의 학급 수는 유아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편성 운영 한다.

② 본원은 한 학급 혼합연령으로 편성하고 인가 학급 범위 내에서 방과후과정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.

**제8조 【원아정원】** ① 본원의 유아 정원은 18명으로 운영한다. 연령별 학급편성 및 유아정원은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 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.

② 본원의 방과후과정반 학급편성 및 정원은 제1항을 준용한다.

③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결원을 보충한다.

### 제 4 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

**제9조 【교육과정 및 교육내용】** ①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고 창의적인 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한다.

② 교육내용은 유치원의 상황,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수준별 내용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.

③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,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하며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및 돌봄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한다.

## 제 5 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

**제10조【생활지도 범위와 방식】** ①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생활지도 할 수 있다.

1.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
2.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·사용
3.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
4.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
5.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
6.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
7.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
8.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
9.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
10. 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

### 【제10조 제1항 10호 그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】

요 건		지도 방법
1	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 (예)반복적 지각	· 유아 및 보호자에게 조언, 상담 실시
2	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 (예)하원 후 재등원(귀가 동의서와 상이한 경우), 보호자의 방문증 패용 등	· 유아 및 보호자에게 유치원 출입에 관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언, 상담 실시
3	시설 이용 (예)타 학교급 시설 이용시 안전 문제 등	· 유아 및 보호자 상담 · 안전 및 질서 유지 저해할 경우 주의
4	교재교구, 시설 등이 파손될 정도 위험한 행위 (예>생활지도가 있었음에도 교재.교구 또는시 설 파손	· 유아에게 주의, 훈육 실시 · 유아와 보호자 상담 · 파손된 교재 교구 및 시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
5	존중과 배려의 유치원 문화 조성을 방해하 는 행위 (예>타인을 신체적, 정신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언행 또는 조장하는 행위 (보호자가 교원에게 불쾌한 농담, 폭언 등 을 하는 행위) (예>보호자가 교원의 수업 등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	· 유아 및 보호자 상담, 주의 · 지속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여 조치

② 위 사항에 대해 「유치원 교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」제2장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 유아에게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할 수 있다.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.

③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

1.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
2.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
3. 기타 교원 및 원장의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는 물품

**【제10조 제3항 3호에 분리보관 가능 물품(예시)】**

요건		보관기간	분리장소	처리방법
1	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(예>날카로운 도구, 장난감 칼, 총, 공구, 레이저 포인터, 화학약품 등	3일	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</li> <li>· 보호자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줌</li> <li>※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간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(물품분리보관 일지 등 활용 가능)</li> </ul>
2	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예>술, 담배 등			
3	기타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(예>고가의 물품, 녹음기, 휴대용 전자기기(스마트워치, 태블릿 pc, 스마트폰 등)등의 소지와 사용 허용 범위에 대해 유치원에서 결정	활동시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</li> <li>※ 소지와 사용범위 작성</li> <li>- 등원하면 전자기기를 가방에 넣어보관</li> <li>- 사용해야할 때는 교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</li> </ul>

**제11조【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】**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원장은 「유아교육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,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,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2조【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】**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,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3조【이의제기】**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 
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교육일수 및 교육시간

**제14조 【교육일수】** ① 주 5일 수업으로 연간 수업 일수는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,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10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,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5조 【교육시간】** ① 본 유치원의 1일 수업운영은 1일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며, 교육과정 이후에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.  
②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1일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5시간이내로 유치원의 실정, 유아의 적응 상태, 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, 계절, 학부모의 요구, 지역의 특수성 등 유치원의 제반 연건을 고려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.  
③ 방과 후의 1일 교육시간은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.(개별 보호자 동의하에 1시간 이내 조정가능)

**제16조 【수업운영 방법】** ①본원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  
② 교사는 유치원교육과정의 기본방향, 편성, 운영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한다.  
③ 교사는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수업자료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다.  
④ 교사는 누리과정을 이해하고, 유아중심 놀이중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.  
⑤ 유치원장은 감염병 상황으로 전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유아발달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의 방법을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7조 【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】** ①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.  
단,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“심각·경계”단계인 경우 인정일수는 상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 인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.

- ② ‘연간 출석 인정 일수’ 및 ‘사전 허가된 기간’ 초과 시 ‘미인정 결석’ 처리한다.
- ③ 신청서와 보고서 등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.
- ④ 체험학습 허가 불허 사항 - 교외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, 유치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유치원 밖 활동
- ⑤ 체험학습 형태 - 가족동반 여행, 친인척 방문, 답사·견학 활동, 체험활동, 감염병 “심각·경계” 단계 시 가정학습
- ⑥ 신청서는 학부모가 교외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실시하며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.

**제18조 【건강검진 및 급식】** ①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② 유치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한다.

**제19조 【원아평가】** ① 원아평가는 원아의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에 역점을 둔다.

② 원아 평가는 학기 초에 평가의 영역, 평가의 방법, 평가도구의 제작, 평가의 시기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.

③ 평가 결과는 원아 개인의 성장 발달을 돕고,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.

**제20조 【생활기록부 작성·보관】** ① 법 제14조에 의거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.

②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·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·관리한다.

## 제 7 장 입학 · 중도입학 · 퇴학 · 수료 및 졸업

**제21조 【입학 자격 및 선발 기준】** ① 본 유치원의 입학 가능한 연령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하며 학급편제 기준에 준한다.

② 재입학은 만 3, 4세 경우 우선 입학할 수 있다.

③ 입학하려는 원아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.

④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기타 원아모집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내규로 정한다.

**제22조 【중도입학】** 본 유치원의 중도 입학 시기는 유치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수시로 할 수 있다.(단 정원초과 시 입학 불가)

**제23조 【퇴학】** ① 본 유치원에서 퇴학하려는 자는 퇴학원서를 보호자 연명으로 작성하여 유치원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
1.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
2. 수업료 징수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
3.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원아의 교육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**제24조 【수료 및 졸업】** ① 본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원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.

1. 수료대상 : 만 3세, 만 4세
2. 졸업대상 : 만 5세

② 원장은 본 유치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유치원 소정 양식에 의한 수료증서 및 졸업증서를 수여한다.

## 제 8 장 수업료 ·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

**제25조 【수업료 및 입학금】** 경기도 교육청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에 따라 공립 유치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.

**제26조 【기타의 비용 징수】** 본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 징수에 관한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징수하며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

## 제 9 장 교직원 관리 규정

**제27조 【교직원 복무 관리】** 본 유치원의 교직원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.

## 제 10 장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

**제28조 【유치원규칙 개정절차】** 규칙은 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 . 시행한다.

**제29조 【시행규칙】**

기타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세칙) 본 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정한다.